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5184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김지훈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변론 종결2019. 12. 11.

판결 선고2020.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부모이고, 피고는 2000. 8. 2. 혼인신고를 마친 D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와 D은 2018. 5. 11. 인도로 출국하였고, D은 2018. 5. 27. 인도의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2018. 6. 1. 귀국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02.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D은 2006. 9. 6.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D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D과 피고 사이에서 2018. 5. 8.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5. 8.자 증여계약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는 위조된 것이다.

2)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D이 사망한 후에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장이 D이 당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인장과 동일하거나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법무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은 2018. 5. 8. 법무사 E에게 당일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른 등기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5. 8.자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이 피고에게 D의 지분을 매도하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증여의사가 없었다거나 법무사 E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사실조회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기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판단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D이 사망한 후에 신청되어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정동주

별지

1) 원고들은 2019.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2019.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주위적 청구원인"만을 유지한다고 기재하였다.